

‘티티체리’

뮤지컬 지방공연 계약서

저작권자 : (주)초이크리에이티브랩

사용권자 : 주식회사 이에스생활문화

지 역 공 연 판 매 계 약 서

주식회사 이에스생활문화(이하 ‘갑’ 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엔투게더(이하 ‘을’ 이라 한다)는 ‘티티체리 뮤지컬’ (이하 ‘공연’ 이라 한다)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2023년3월~2024년2월까지 대한민국에서(단기공연진행) 진행될 ‘공연’ 을 ‘갑’ 이 ‘을’ 에게 판매함에 있어 ‘갑’ 과 ‘을’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‘갑’ 과 ‘을’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.

제 3 조 (공연개요)

1. 공 연 명 : “가족뮤지컬” 티티체리
2. 공연장소 : 전국공연장 (서울시 소재 공연장 제외)
3. 공연일시 : 2023년3월 ~ 2024년2월까지

제 4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계약 날인시점부터 2024년2월까지로 한다.

제 5 조 (판매대금)

1. ‘공연’ 에 대한 판매대금은 각 지역당 2일5회~6회공연기준 일금 사천오백만원정(₩45,000,000) /1일 공연 삼천오백만원정(₩35,000,000) (이하 모든 금액 부가세별도)를 공연시점 2일전에 지급하여야 한다.
2.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한다.
 - 가)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공연에 대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일억원(₩100,000,000원)을 2022년11월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, 마지막 공연(2024년2월29일)후 보증금을 환급하기로 한다.
 - 나) 갑 입금계좌 : 농협은행 301-0300-0315-81 이에스생활문화 (박준철)
 - 다) 을 환급계좌 : 기업은행 153-121870-04-014 엔투게더 (이승철)

제 6 조 (‘갑’ 의 권리와 의무)

1. ‘공연’ 을 위해 제작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시스템(무대, 조명, 음향, 특수효과 등)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2. 배우 출연료와 스텝인건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3. 하드웨어 시스템, 배우와 스텝의 이동, 숙박 및 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.
4. ‘갑’ 은 ‘공연’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연의 사전 기획 및 연습에 최선을 다한다.
5. 공연장 로비 내 캐릭터 상품 판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
6. 기본 포스터 이미지를 ‘을’ 이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
제 7 조 (‘을’ 의 권리와 의무)

1. 공연의 주관자로서의 기본의무인 대관, 공연의 홍보, 티켓 판매, 현장 진행 업무의 책임을 지며 반드시 본 계약에 따른 날짜와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.

2. 공연당일 대기실 준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3. ‘갑’ 이 원활하게 무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대 SET UP 기간에 대해 1일(오전9시~22시)을 확보한다.(첫 지역투어 셋업시간 협의 조절)
4. 무대 SET UP 기간 중 냉/난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.
5. ‘갑’ 이 제공한 기본 디자인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며, 모든 홍보 집행 전 홍보 인쇄물 및 영상물 디자인에 관하여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. 또한 ‘을’ 은 모든 홍보물 내 <주최,제작:(주)초이크리에이티브랩,(주)이에스생활문화 / 주관,운영 엔투게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6.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지역의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.
7. ‘갑’ 이 원활하게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합의한다.
8. 공연장 로비내에서 캐릭터관련상품 및 기타완구상품등으로 카드회원가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
9. 공연티켓권장가격의 제한 - R석(1층)할인가 36,000원의 적정가로 하여야 한다. 이외의 티켓판매처(티몬,위메프,티켓링크 , 지역맘카페 등) 오픈 시 필히 “갑” 과 가격조절후 오픈한다.
9. 제 5 조 및 제 6 조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시 원칙적으로 ‘을’ 이 부담한다.
10. 월2개지역이상의 공연스케줄을 확립하여야 한다. (배우,스텝들의 귀속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 단! 간혹 월2회 이하의 스케줄 확보 시 배우, 스텝들이 이탈할 경우 공연완성을 위한 공연연습비용등 일체를 부담한다.)

제 8 조 (계약의 해지)

1. 계약기간 내 어느 일방(이하 ‘위약당사자’ 라 한다)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또는 상호 협력의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대방은 반드시 서면으로 ‘위약 당사자’ 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그 효력은 통보와 동시에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. 계약의 해지로 인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금전상, 신용상, 명예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단 ‘위약 당사자’ 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2.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이 제 5 조에서 약정한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‘갑’ 은 ‘을’ 에게 위임한 ‘공연’ 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‘을’ 에게 있다
3. ‘공연’ 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‘을’ 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‘을’ 이 ‘갑’ 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은 ‘갑’ 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조건 없이 귀속되며, ‘갑’ 에게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4. 본 계약서에서 약정된 공연 지역에서 ‘을’ 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연 자체가 취소되더라도 ‘갑’ 은 ‘을’ 로부터 보장받은 해당 지역의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.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공연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‘을’ 에게 있다. 예매에 따른 환불의 책임 역시 ‘을’ 에게 있다.
5. ‘공연’ 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‘갑’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‘갑’ 은 ‘을’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일체를 ‘을’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공연 취소로 인해 ‘을’ 이 입게 될 금전상, 신용상, 명예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6. ‘갑’ 과 ‘을’ 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7. 일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본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- 가)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나) 제3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
- 다)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
- 라)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음을 예측하고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

제 9 조 (불가항력)

천재지변 등 ‘갑’ 과 ‘을’ 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‘공연’ 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‘갑’ 과 ‘을’ 은 사안별로 합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.

제 10 조 (비밀유지의 의무)

1. ‘갑’ 과 ‘을’ 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적 비밀 등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2. ‘갑’ 과 ‘을’ 가운데 어느 일방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양도금지의 의무)

본 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, 이해관계, 의무사항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. 단, ‘갑’ 은 ‘공연’ 제3의 기획자에게 ‘공연’ 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되, 이 경우 ‘갑’ 은 ‘을’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.

제 12 조 (기타사항)

1. ‘갑’ 과 ‘을’ 은 양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본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르기로 한다.
2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추가적인 계약이 필요할 경우 본 계약서 뒤에 별첨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‘갑’ 과 ‘을’ 이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한다.

제 13 조 (분쟁의 조정)

1. ‘갑’ 과 ‘을’ 은 본 계약 혹은 본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2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.

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, ‘갑’ 과 ‘을’ 이 모두 기명 날인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 년 10 월 12 일

갑 : 주식회사 이에스생활문화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22길28
사업자 등록번호 889-87-02455
대표 박 준 철



을 : 주식회사 엔투게더
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99 2층
사업자 등록번호 587-81-02616
대표 이 승 철



별지

부속합의서

1, 이에스생활문화의 영업력으로 인한 공연판매시 엔투게더에 이관한다.
(타기획사의 공연계약시 공연거래플랫폼 이에스생활문화에서 거래를 우선으로한다.)

2, 2023년 상반기는 이에스생활문화의 기존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 일부 지역초청공연을 상호 의논결정할 수 있다.

3, 갑의 서울공연 초연 및 앵콜공연스케줄을 우선으로 한다.

저작권사의 계약기간 불연장시 보증금 전액반환